

—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국가와 민주발전을 위해 공헌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 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게
-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와
-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본인·배우자 또는 직계존·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·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
-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함(안 제2조 제2항)

4. 참고사항

-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
-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7항
- 도 세정13400-11396(2003. 5.23) 시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
- 도 세정13400-11655(2003. 6.19) 시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

5. 검토의견

- 행정자치부의 도, 시·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구미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임.
-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등 상위법령에 의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게도 기존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임.
- 따라서,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예우 및 지원 차원에서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.